

2.6. 인센티브에 관한 운영세칙

2007. 5. 17 제정

2007. 10. 23 제1차 개정

2014. 01. 07 제2차 개정

2020.09.01. 개정

1. 본 규정은 BK21 FOUR 미래수의학선도교육연구단(이하, 연구단)의 인센티브 지원에 있어서 차등적 수혜의 정도를 결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인센티브는 분야별 최우수 업적이나 연구단 중점사업의 추진에 대한 인센티브와 분야별 업적 총합의 우수함에 대한 인센티브로 구분한다.
3. 분야별 ‘최우수’ 혹은 중점사업의 추진에 대한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 1) 연구부문은 주저자로 발표한 SCI논문에 대하여 우수논문(IF 5.0이상), IF평균, 논문수를 기준으로 한다.
 - 2) 교육분야는 영어강좌개설 및 강의평가, 분야별 공통/공동/세미나교과목 개발, 산학협동교과목개설, 기존과목 폐지 후 신설교과목 개설, 산학연계 외부연자활용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3) 산학협력분야는 연구단의 산업체대응자금 수주실적(간접비수주금액기준), 국내 및 해외 특허등록(특허출원은 제외)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4) 기타 연구단 평가에 절대적으로 기여한 경우(예, 수상, 표창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4. 종합업적에 대한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 1) 교육, 연구, 산학협동분야의 실적, 연구단의 운영에 대한 참여도 등 연구단의 실적 평가와 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BK21 FOUR 사업의 참여교수업적평가 기준에 따른다.
 - 2) 종합실적 기여도 상위 30%에 해당하는 참여교수는 다음과 같이 우대할 수 있다.

① 대학원생 지원 우대

② 국제협력비 지원 우대: 평균지원금의 20% 이상 지원

③ 대학원생의 월 지원금 증액 지원

3) 종합실적 기여도에 하위30%에 해당하는 참여교수는 다음과 같이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신진연구인력의 활용 제한

② 대학원생 지원 제한

③ 국제협력비 지원제한: 평균지원금의 20% 이상 삭감

5. 계약교수, 박사후과정연구원, 참여대학원생도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6. 사무직원의 경우, 업무의 추진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7. 인센티브는 BK21관련 제반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 지급하되 금액은 가용 자원 규모에 따라 조정한다.

8. 기타 세부사항은 실무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날(2007. 5. 17)로 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날(2007. 10. 23)로 부터 시행한다.